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841 발의연월일: 2024. 7. 17.

발 의 자:주호영·권영세·곽규택

장동혁 • 이헌승 • 김종양

김형동 · 김예지 · 최은석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 아래 비경작자의 농지소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상속 등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소유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의 경우 예외가 인정되지 않고 있음. 이로 인해, 오랜 관습에 따라 종중과 전통사찰은 소유 농지를 명의신탁을 통해 경작해 오고 있으나, 명의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농민과 농업법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해 명의신탁을 해지할 수없는 불합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실정임

이에, 종중과 전통사찰이 이미 소유하고 있는 명의신탁 농지에 대해 종중과 전통사찰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제5호 신설).

법률 제 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제9호의2를 제10호의2로, 제5호부터 제 9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중 이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지에 관한 소유권을 종중 또는 전통사찰의 명의로 이전등기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생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 (현행		
략)	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등록된 종중과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전통사찰 중 이		
	미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u>5.</u> ~ <u>9.</u> (생 략)	<u>6.</u> ∼ <u>10.</u> (현행 제5호부터 제9		
	호까지와 같음)		
<u>9의2.</u> (생 략)	<u>10의2.</u> (현행 제9호의2와 같음)		
<u>10.</u> (생 략)	<u>11.</u> (현행 제10호와 같음)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